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2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김준혁

허성무 · 송옥주 · 서미화

김종민 · 민병덕 · 임미애

전종덕 • 박지원 • 이기헌

박희승 • 이재관 • 박해철

정진욱・김 윤・조계원

권향엽 · 정일영 · 전진숙

송재봉 · 최민희 · 양부남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등록 체육시설업
- 4.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

제12조 전단 중 "제10조제1항제1호에"를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제2호에"를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①
구분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등록 체육시설업
<u><신 설></u>	4.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u>제10조</u>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u>제10조</u>
<u>제1항제1호에</u> 따른 등록 체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	
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	
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 전 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레이크(레스러워워스) 지크(제 페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u>제</u>
<u>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u> -
② ~ ④ (현행과 같음)